



##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영향

이정환 선임연구원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11개국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에 대한 구체 방안을 2013년 2월 14일 발표함.

-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금액에 0.1%, 파생상품 거래금액에 0.01%의 세율을 적용함.
- 금융거래세 적용 상품은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채권, MMF, 구조화 상품, 증권대차 및 repo, 주식·채권·외환 관련 파생상품(futures, option, swap)임.
  - 보험계약, 현물 외환거래, 기업 및 가계대출, 기업의 증권 발행, 국채 발행 등은 제외됨.
- 민간 금융기관<sup>1)</sup>이 금융거래세의 징수 대상이며 중앙은행과 국가기관, 예탁기관, 개인, 기업의 거래는 제외됨.
  - FTT(Financial Transaction Tax) 회원국<sup>2)</sup>의 금융기관과 여타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하였을 경우 양쪽 금융기관 모두 납세 대상이 되며, FTT 회원국에 속한 개인과 여타국 금융기관의 거래의 경우 개인은 면세가 되나 금융기관은 징수 대상이 됨.
  - 금융상품의 발행지가 FTT 회원국일 경우에도 거래 금융기관은 납세 대상이 됨.
- 과세기준은 증권일 경우 거래가격, 파생상품일 경우 기초자산의 액면가격이며 과세는 차액기준이 아닌 총계기준(gross)으로 부과됨.
- 금융거래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FTT 회원국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경우 2014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융거래세는 세수 증대와 투기성향을 띤 위험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입안 취지로 함.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거래세 도입이 주장되었음.

1) 연기금 관리 금융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금융거래세 징수 대상이 됨.

2)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이하 FTT(Financial Transaction Tax) 회원국으로 명칭)

- EU는 과세로 인한 거래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300~350억 유로 (FTT 회원국 세수의 1% 수준)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거래세는 미래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가 지속될 경우 유동성이 유로지역으로 급속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금융거래세는 입안 취지와는 달리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소송, 금융시장 왜곡, 소비자 부담 전가, 금융거래 위축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행할 경우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과 투자 감소가 GDP 감소로 이어지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sup>3)</sup>
    - EU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2050년 EU GDP는 0.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미국과 영국 등은 세금 관할권에 대한 FTT의 일방적 결정이 전례가 없으며, 금융거래세 도입이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국제 조세협력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금융거래세는 차액기준이 아니라 개별 금융거래 모두에 대해 총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써 실효세율 (effective rate) 상승(cascade effect<sup>4)</sup>) 및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거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 금융거래세는 연기금에도 적용됨에 따라 연기금(특히 개방형 연기금의 경우)운용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조세 부담으로 글로벌 자금의 유럽 금융시장 유입 감소로 유럽 금융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짐.
    - 유럽은행협회(EBF)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본이 유로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거래도 줄어들어 의도한 세금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급작스런 자본 유출입 대비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채권거래세<sup>5)</sup> 역시 위기 시에는 거래시장을 위축시켜 거시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겠으나, 금융시장 왜곡과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Clifford Chance, 연합뉴스 2/15, 2/21)

3)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주가 상승이 제한될 경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증가 및 투자 감소로 GDP 감소가 예상됨.  
 4) 채권 판매의 경우 브로커 등 모든 금융기관에 0.1%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vendor→broker→clearing member→clearing system(징수 면제)→clearing member→broker→fund) 실효세율은 1.0%가 됨.  
 5) 2단계 채권거래세는 평시에는 낮은 세율, 위기 시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